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05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1나202054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068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강인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원준성, 최주선

변론 종결 2021. 10. 28.

판결 선고 2021. 12. 23.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가합10685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3. 체결된 매매계약을 363,972,99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63,972,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기한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3쪽 6행의 "피고는"을 "B은"으로, 3쪽 16행과 5쪽 13행의 각 "1,223,750원"을 각 "1,233,750원"으로, 8쪽 1행 및 9행의 "605,00,000원"과 "60,500,000원"을 각 "605,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 8쪽 아래에서 5행의 "그러나"부터 9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채널공급계약은 B이 피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계약은 B과 피고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이를 통해 발생할 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채널공급계약은 지급보증금액 6억 500만 원, 보증기한 1년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사전에 제공하되 위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담보제공의 의무 이행 방법으로 제1금융권의 지급보증서, 제1금융권에 준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증권, 피고가 인정하는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현금 또는 기타 상당의 동산의 질권설정 중 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물품공급자가 피고로 변경되기 전까지 B에 물품을 공급하던 D에 대해서도 B은 원고의 지급보증 3억 2,500만 원, C은행의 지급보증 1억 3,0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의 방법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였다.

④ B과 피고의 이 사건 채널공급계약에 따른 거래관계는 2019. 11. 14.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그 이후인 2019. 12.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졌으며, 그 채권최고액은 B과 피고 사이에 거래종료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매입대금채무액으로 정산한 3억 원이다.

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널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약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B이 사전에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피고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B이 피고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종료한 후 이미 발생한 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으로서, 이 사건 채널공급계약에서 정한 담보제공의무의 본지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B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당장의 변제로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에게 애초 약정한 담보 중 일부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종국적으로 변제력의 감소를 방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B과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을 제6호증의 1, 2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B이 신규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이 B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자금의 융통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융통한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으로는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자 B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이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B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을 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유일한 적극재산이자 자신의 사업장을 처분하여 채무의 일부를 정산하였을 뿐 달리 자금을 융통한 것은 아니어서 더 이상 기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는 B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받을 수 없게 된 반면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을 전부 변제받았는데, B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원고에 대한 채무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B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도 B이 통신장비 판매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상당한 가격이라거나 그 매매대금이 실제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박지연

판사김선아

별지